

<p>하고 싶어서 그립니다.</p> <p>(「그러니까 제가 補充으로 말씀드릴까요?」 하는 委員 있음)</p> <p>○ 委員長 朴尙東 아니 가만히 계세요. 뭐라 고요?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.</p> <p>○ 李聲九委員 그러니까 財團……</p> <p>○ 委員長 朴尙東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. 그것을 너무 裝置를 金炯奎委員 님께서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具體의으로 여 기 지금 條例案 第1條부터 第9條까지 전부 하나 하나 質疑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. 그려면 일단은 맡겨봅시다. 맡겨보고, 우리가 監查를 할 때 반드시 監查資料에 의해서 監 查를 받도록 되어 있고, 또 來年度 市政開 發院이 만들어져서 正常的인 절차에서 잘 못 갈 때, 實績이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 든지 우리의 決議에 의해서 저는 솔직히 開 發院 罷止에 우리 同意를 할 수 있는 것입 니다. 그러니까 諒解를 좀 하고 합시다……</p> <p>(「委員長님, 제가 正式으로 動議發言을 하겠습니다.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○ 委員長 朴尙東 네.</p> <p>○ 柳準向委員 豫算審議에서도 충분히 다룬 것이고, 오늘도 진지한 討論을 했습니다. 때 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承認을 하되 단, 財 團法人 定款 作成時에 우리 市議會가直接, 間接의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이것을 챙겨주시고, 또 이 開發委員會가 效 率性있고 能率의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주기 를 바라며, 만약에 별 效率성이 없으면 來 年度에는 이 문제가 變動될 可能性도 있다는 前提下에 이것을 承認할 것을 正式으로 動議 합니다.</p> <p>○ 委員長 朴尙東 일단 知性人들이니까 한 번 맡겨봅시다.</p> <p>○ 柳準向委員 네.</p> <p>○ 委員長 朴尙東 柳準向委員의 發言을 企劃 管理室長께서 參考로 하셔서 意見이 反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잘 알겠습니다.</p> <p>○ 李聲九委員 그런데 定款에다 그런 것을</p>	<p>삽입할 수 없습니까? 市議會 監督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넣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?</p> <p>○ 柳準向委員 그러니까 方法이 있으면 넣어 달라는 條件을 제시했고……</p> <p>○ 李聲九委員 對答 좀 듣겠습니다.</p> <p>○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主務官廳의 立場에서 모든 監查를 일반 行government가, 저희 執行部 가 받는 것과 똑같이 市議會 監督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基本 으로 基調를 깔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議會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, 그것을 한 번 명 확하게 검토해서 그 최대한 線까지 保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○ 李聲九委員 알겠습니다. 그럼 그것을 保障 하는 條件으로 柳委員님 動議를 再請합니다.</p> <p>○ 委員長 朴尙東 네, 異議가 없으시죠?</p> <p>(「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서울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 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?</p> <p>(「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감사합니다. 通過된 것을 선포합니다.</p> <p>(議事権 3打)</p> <hr/> <p>(參照)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, 연구하기 위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 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한다)을 보호, 육 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) ①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 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기금은 서울특별시(자치구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이외의 자의 출</p>
--	---

<p>연금으로 조성한다.</p> <p>제3조(출연금) 서울특별시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.</p> <p>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서울특별시 시정과 관련된 재반 연구·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연구원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제5조(사업계획등 승인) 연구원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6조(결산서 제출) 연구원은 매회계년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보고, 검사 등)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비밀엄수의 의무)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나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제9조(시행규칙) 기금 및 출연금의 운영관리,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은 이 조례에 근거한 법인으로 본다.</p> <p>③(기금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.</p> <hr/> <p>○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條例案과 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해서 조금 質疑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(「質疑 하겠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 네, 말씀하시지요.</p> <p>○ 全潤拘委員 清掃事業本部 設置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. 서울市民이 가장 지금 先決 문제로 처리해야 될 것이 清掃問題하고 交通問題입니다. 서울市에서 지금 本部를 설치해서 市民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간단히 몇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. 清掃本部 設置의 當爲性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.</p> <p>○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市의 問題는 市民生活에 있어서 극히 아주 皮膚에 와 닿는 것 중에 청소가 제일 큰 問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청소가 잘되면 여러 가지 環境이라든지 또 生活의 水準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든보이고 또 실지 그렇게 内實化 될 수 있는 그런 狀況이라고 判斷이 되는데 이 쓰레기 發生量이 하루에 지금 3萬 2,000톤, 8.5톤 트럭으로다 3,800臺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이 지금까지는 타고, 안 타고, 버릴 것, 안 버릴 것 전부 따지지 않고 한데 몰아서 난지도 100여萬坪에다 계속 갔다 부어서 난지도를, 100餘萬坪되는 땅을 70m가 넘는 완전히 산으로써 雘貌를 시켰습니다. 그러나 저희가 2年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金浦海岸埋立地에다 별도로</p>
--	---

부
체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